

[2023년 상표법 기본강의 쪽지시험]

1. 쪽지시험 자료

문제와 정답이 아래의 사이트에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변리사시험 법과목 완전정복(<https://cafe.daum.net/kyn54>)

2. 쪽지시험 해설

쪽지시험 간략해설을 아래의 사이트에 공개하였습니다.

변리사시험 법과목 완전정복(<https://cafe.daum.net/kyn54>)

상표법 무료강의 안내

1. 상표법 기본강의 수강생을 위한 후속 무료강의 LIST

구분	강의명	개강예정
1차	1차 상표법 OX 강의	23년 6월
	1차 상표법 기출강의 (22개년 진도별 기출풀이)	23년 7월
2차	2차 상표법 기본강의	24년 3월
	2차 기초GS	24년 3월

2. 상표법 핵심이론정리 수강생을 위한 후속 무료강의 LIST

구분	강의명	개강예정
2차	2차 상표법 기본강의	24년 3월
	2차 기초GS	24년 3월

[김영남 변리사가 포함된 패키지 종류]

패키지 종류	특이사항	학원
상표법 T-pass		변리사스쿨, 월비스
디자인보호법 T-pass		변리사스쿨, 월비스
Full 패키지 (민특상디)	인강 무제한 수강 선착순 20% 할인 중	변리사스쿨
Full 패키지 (특상디)	인강 무제한 수강 선착순 20% 할인 중	변리사스쿨
기본강의 패키지 (민특상디)		변리사스쿨
기본강의 패키지 (특상디)		변리사스쿨

상표법 1차 기본강의 쪽지시험 1회

(2023. 4. 18. 기본강의 복습)

[상표법의 목적]

- ① 상표법은 다른 산업재산권법 보다, 수요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적인 성격이 강하다. ()
- ② 상표법은 이미 등록된 상표를 보호함은 물론, 미등록상표라도 일정부분 보호하고 있으며 이는 사용주의적 요소가 가미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상표의 기능]

- ① 상표의 기능 중에서 자타상품식별기능은 그 기능이 발휘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표의 다른 기능도 발휘될 수 없다는 점에서 본원적인 기능에 해당한다. ()
- ② 품질보증기능은 공익적 성격의 기능으로서, 품질의 우수성을 담보할 수 있다. ()
- ③ 광고선전기능은 사익적인 기능이다. ()

상표법 1차 기본강의 쪽지시험 2회

(2023. 4. 19. 기본강의 복습)

[상표의 개념]

- ① 상표법에서 말하는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하고, 상표법상 상표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등록된 경우에는 상표등록의 무효사유에 해당한다. ()
- ②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등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하지만,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사용의사확인제도]

- ① 국내 또는 외국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려고 하는 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
- ② 제3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한 상표등록출원은 거절이유 등에 해당한다. ()
- ③ 출원인은 상표등록출원을 하면서 사용의사가 있음을 입증하여야 하고, 이를 간과한 경우에는 출원 중에도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사용의사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 ()
- ④ 지정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타법에 따라 부여되는 일정한 자격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상표등록출원인이 이와 같은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상표법 제3조 제1항 본문을 이유로 거절하여야 할 것이다. ()

[상표의 사용]

- ① 상품의 내부 부품에 표시된 표장으로서, 상품의 유통이나 통상적인 사용에 있어서는 그 존재조차 알 수 없고 오로지 그 상품을 분해하여야만 인식할 수 있는 표장은 상표로서 기능을 할 수 없으므로, 상표라 할 수 없다. ()
- ② 광고의 내용 및 형식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하는 바가 없으므로, 상품에 관한 정보를

일반 소비자에게 시각적으로 알리는 정도의 그림이나 글이면 족하다. ()

- ③ 제2조 제1항 제11호 다목 소정의 광고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상품명이나 제조원이 표시되어야 한다. ()
- ④ 상표법에서 말하는 상표의 사용이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표장의 형상, 소리 또는 냄새로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에 전자적 방법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

상표법 기출지문

▶ 자동차 부품인 에어 클리너를 제조하면서 그 포장상자에 자동차 제작회사의 등록상표의 표시를 하였더라도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출처표시가 명백하고 부품 등의 용도설명이나 에어 클리너가 사용되는 적용차종을 밝히기 위하여 사용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에 있어서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

상표법 1차 기본강의 쪽지시험 3회

(2023. 4. 25. 기본강의 복습)

[동일 또는 유사]

- ① 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전체관찰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구성요소의 각 부분만을 추출하여 비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 ② 상표에서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은 요부가 될 수 없으며, 식별력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상표가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다수 등록·출원공고 된 사정도 고려할 수 있으므로, 등록·출원공고 된 상표의 수, 상표권자나 출원인의 수,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본질적인 식별력, 특정인의 독점적응성 등을 종합적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 ()
- ③ 결합상표에 있어서, 상표의 각 구성 부분이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요부관찰을 할 수 없다. ()
- ④ 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결합상표의 일 요부를 분리하여 관찰하는 분리관찰을 할 수 있으나, 해당 지정상품과 관련된 실제 거래사회에서 전체로서만 사용되고 인식되는 경우에는 분리관찰을 할 수 없다. ()
- ⑤ 상표의 유사판단은 양 상표를 나란히 놓고 대조하는 대비관찰이 아닌 별도의 기회와 장소에서 판단을 하여야 한다. ()
- ⑥ 양 상표의 유사여부는 상표의 외관·칭호·관념을 일반 수요자의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출처혼동의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
- ⑦ 양 상표에서 외관·칭호·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면 유사상표이고, 전체로서 수요자가 출처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 ⑧ 결합상표인 출원상표가 특정상품에 대한 거래사회에서 분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와 관련이 없는 지정상품에 대한 거래사회에서도 전체로서 인식된다고 볼 수 있다. ()
- ⑨ 상표의 유사판단은 양 상표를 나란히 놓고 대조하는 대비관찰이 아닌 별도의 기회와

장소에서 판단을 하여야 한다. ()

- ⑩ 오로지 기술적 표장만으로 된 상표와 다른 식별력 있는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상표의 식별력 유무는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 ⑪ 양 상표가 일반적·추상적으로 유사해 보인다 하더라도, 상표권자를 달리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해서 양 상표 모두 등록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

기출지문

- ▶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이 발생할 때는 그 중 어느 하나의 호칭이나 관념이 타인 상표의 호칭 또는 관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유사한 상표라고 할 수 있다. ()

상표법 1차 기본강의 쪽지시험 4회

(2023. 4. 26. 기본강의 복습)

[제 33 조]

- ① 식물신품종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품종명칭은 등록이 됨과 동시에 해당 품종에 대하여 보통명칭으로 본다. ()
- ② 보통명칭은 반드시 전국적인 범위에서 지정상품의 일반 수요자들이 그 상품에 대한 보통명칭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
- ③ 보통명칭은 문자로만 구성될 수 있고, 관용표장은 문자 이외에 기호나 도형이 포함될 수 있다. ()
- ④ 제33조 제1항 제2호는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 ⑤ 절대적 품질표시는 지정상품과 무관하게 제3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할 수 있다. ()
- ⑥ 특수 의약품에 대한 상표가 성질표시인지 여부는 의사 등의 전문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 ⑦ 흔히 있는 성명이나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

기출지문

- ▶ 특정의 상표가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그 상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사용되는 경우에는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만, 그에 이르지는 아니하고 관련 거래업계에서 당해 업자들 사이에서만 그 상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관용적으로 사용될 때는 그 특정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표장으로서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된다. ()
- ▶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어느 상표가 지정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상표가 지정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표장으로 실제 쓰이고 있거나 장래 필연적으로 사용될 개연성은 고려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상표법 1차 기본강의 쪽지시험 5회

(2023. 4. 27. 기본강의 복습)

[제 33 조]

- ① 제33조 제1항 제4호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略語) 또는 지도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 ② 지리적 명칭이 우연히 타 지역에 소재한 시설의 이름으로 사용되고, 그 시설의 이름이 현저하게 알려진 결과 반사적으로 현저해진 경우에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라고 할 수 없다. ()
- ③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대학교를 의미하는 단어가 결합하여, 현저한 지리적 명칭을 떠나 새로운 관념이 형성된 경우에는 제33조 제2항에 따라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
- ④ 간단하고 흔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
- ⑤ 제33조 제1항 제7호는 제3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적용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 ⑥ 제33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사용에 의해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고, 이는 제33조 제2항에 제33조 제1항 제7호가 포하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 ⑦ 제3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사용에 의해서 식별력을 취득하고, 그 사용에 의해 식별력을 취득한 부분을 그대로 포함하여 다른 부분이 결합된 경우라도 이미 취득한 식별력이 감쇄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33조 제2항이 인정될 수 있다. ()

기출지문

- ▶ 상표법 제33조 제2항 소정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이 인정되어 상표등록을 받기 위하여는 출원인이 상표등록출원전 그 상표를 상당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독점 사용하여 수요자간에 특정인의 상품출처로서 식별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
- ▶ 상표법 제33조 제2항 소정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여부는,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이 세계적인 신문, 잡지에 광고된 실적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추정할 수 있다. ()
- ▶ 보통명칭, 관용상표 및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대해서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 ▶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어떤 상표가 특정지역에서 수요자들 사이에 특정인 상품 출처로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비록 그 상표가 전국적인 범위에서 알려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표법 제33조 제2항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

상표법 1차 기본강의 쪽지시험 6회

(2023. 5. 2. 기본강의 복습)

[제34조 제1항 제1호 가목]

- ① 대한민국은 자기의 감독용 또는 증명용 인장·기호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일반상표로 출원하여 등록을 받을 수 있다. ()
- ② 대한민국은 자기의 감독용 또는 증명용 인장·기호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증명표장으로 등록을 받을 수 있다. ()
- ③ 제34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대한민국이나 공공기관의 감독용 또는 증명용 인장·기호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제34조 제1항 제1호 나목]

- ① 파리협약 동맹국, 세계지식재산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 조약 체약국(이하, "동맹국 등"이라 함)의 국기와 동일·유사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 ()

[제34조 제1항 제1호 다목]

- ① 국제적십자, 국제올림픽위원회, 국제기관의 명칭, 약칭, 표장과 동일·유사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 ()
- ② 국제적십자, 국제올림픽위원회, 저명한 국제기관이 자기의 명칭, 약칭 또는 표장을 상표등록 출원한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

[제34조 제1항 제1호 라목]

- ① 세계무역기구로부터 통지받아 특허청장이 지정한 동맹국 등의 문장, 기, 훈장, 포장 또는 기장이나 동맹국 등이 가입한 정부 간 국제기구의 명칭, 약칭, 문장, 기, 훈장, 포장 또는 기장과 동일·유사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 ()
- ② 제34조 제1항 제1호 라목 단서에 따르면, 동맹국 등이 가입한 정부 간 국제기구가 자기의 명칭·약칭, 표장을 상표등록출원한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

[제34조 제1항 제1호 마목]

- ① 세계지식재산기구로부터 통지받아 특허청장이 지정한 동맹국 등이나 그 공공기관의 감독용 또는 증명용 인장·기호와 동일·유사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 ()
- ② 세계지식재산기구로부터 통지받아 특허청장이 지정한 동맹국 등이나 그 공공기관의 감독용 또는 증명용 인장·기호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그 인장 또는 기호가 사용되고 있는 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이라도, 그 동맹국 등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
- ③ 세계지식재산기구로부터 통지받아 특허청장이 지정한 동맹국 등이나 그 공공기관의 감독용 또는 증명용 인장·기호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그 인장 또는 기호가 사용되고 있는 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이라도, 그 동맹국 등은 증명표장으로 등록을 받을 수 있다. ()

[제34조 제1항 제2호]

- ① 국가·인종·민족·공공단체·종교 또는 고인과의 관계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이들을 비방 또는 모욕하거나 이들에 대한 평판을 나쁘게 할 우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 ()
- ② 제34조 제1항 제2호에서 저명한 고인은 죽은 자에 한한다. ()
- ③ 제34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원인이 저명한 고인의 명성에 편승하고자 하는 부정경쟁의 목적이 있는지 여부 등 주관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기출지문

- ▶ 출원상표 “JAMES DEAN”은 단순히 고인의 성명 그 자체를 상표로 사용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며, 고인과의 관련성에 대한 아무런 표시가 없어 고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한 상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 ▶ 검은색 바탕에 흰 오선을 긋고 그 위에 단순히 “MOZART”라는 고인의 성명 자체를 기재하여 출원·등록된 상표는 고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한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제34조 제1항 제3호]

- ① 국가·공공단체 또는 이들의 기관과 공익법인의 비영리 업무나 공익사업을 표시하는 표장으로서 저명한 것과 동일·유사한 상표라도, 그 비영리 업무나 공익사업과 관련이 없는 상품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
- ② 국가·공공단체 또는 이들의 기관과 공익법인의 비영리 업무나 공익사업을 표시하는 표장으로서 저명한 것과 동일·유사한 상표라도, 그 국가 등이 자기의 표장을 상표등록출원한 경우에는

등록을 받을 수 있다. ()

- ③ 국가·공공단체 또는 이들의 기관과 공익법인의 비영리 업무나 공익사업을 표시하는 표장과 동일·유사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 ()

상표법 1차 기본강의 쪽지시험 7회

(2023. 5. 4. 기본강의 복습)

[제34조 제1항 제4호]

- ① 상표의 구성 중 “상표 그 자체로서 공서양속에 반하는 부분”이 부기적인 부분으로 포함된 경우에는 제34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
- ② 타인의 저명한 상표를 모방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에는 제34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 ()
- ③ 상표를 등록하고 사용하는 행위가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제34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 ()
- ④ 저명한 타인의 성명을 포함하는 상표를 출원함으로써, 수요자의 구매력을 불공정하게 흡인하고, 그 저명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면, 제34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 ()
- ⑤ 제34조 제1항 제4호는 보충적인 규정이므로, 제34조 제1항 제6호와 동시에 적용할 수 없다. ()
- ⑥ 상표등록출원인이 출원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하지 않고, 사용할 의사도 없다면, 이는 상표를 선점하고자 하는 부정한 목적의 출원이므로 제34조 제1항 제4호가 적용될 수 있다. ()
- ⑦ 저명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상표라도 제34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
- ⑧ 저명한 영화의 제명이나, 캐릭터의 명칭을 모방한 상표등록출원은 제34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 ()

기출지문

- ▶ 본호에서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 함은 상표의 구성자체 또는 그 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에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나 내용이 사회공공의 질서에 위반하거나, 사회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를 말한다. ()
- ▶ 대법원의 주류적인 판례에 의하면, 창작성 있는 인용상표가 국내에서 주지·저명하다면 이를 모방한 상표를 출원한 것은 본호에 위반된다고 한다. ()
- ▶ 출원상표가 본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회의 거래실정 및 도덕관념의 변화 등에 따라 상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 ▶ 출원상표가 출원인인 법인의 명칭과 달라 그 출원인이 다른 법인의 명칭으로 인식되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상표라고 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확고한 입장이다. ()
- ▶ 주지·저명한 타인의 상표를 모방하여 상표등록 출원하는 경우에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9호 또는 제11호와 함께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할 수 있다(다만, 그 지정상품은 같은 것으로 한다). ()
- ▶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재양을 막는다는 부적을 표시함이 분명한 상표를 아동복, 속내의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하는 것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고 한다. ()

[제34조 제1항 제5호]

- ① 제34조 제1항 제5호는 “정부 또는 외국정부가 개최하거나 정부 또는 외국정부의 승인을 받아 개최하는 박람회의 상패·상장 또는 포장과 동일·유사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 ② 정부 또는 외국정부가 개최하거나 정부 또는 외국정부의 승인을 받아 개최하는 박람회의 상패·상장 또는 포장과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박람회에서 수상한 자가 그 수상한 상품에 관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
- ③ 정부 또는 외국정부가 개최하거나 정부 또는 외국정부의 승인을 받아 개최하는 박람회의 상패·상장 또는 포장과 동일·유사한 표장이 있는 상표라도, 그 박람회에서 수상한 자가 그 수상한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해서 상표의 일부로서 그 표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

[제34조 제1항 제6호]

- ① 타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서명·인장·아호·예명·필명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는 제34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 ()
- ②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서명·인장·아호·예명·필명 또는 이들의 약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는 제34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 ()

- ③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서명·인장·아호·예명·필명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으나, 그 타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등록을 받을 수 있다. ()
- ④ 자기의 성명이 저명한 타인의 성명과 동일한 경우에는 그 타인의 승낙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제34조 제1항 제6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
- ⑤ 자신의 성명이 저명한 타인의 성명과 동일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기의 성명을 상표로서 사용함에 있어서 저명한 타인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다. ()
- ⑥ 출원상표에서 저명한 타인의 명칭이 부기적인 부분에 포함된 경우에도 제34조 제1항 제6호가 적용될 수 있다. ()
- ⑦ 등록상표가 저명한 타인의 명칭과 비유사한 경우에는 제34조 제1항 제6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

기출지문

- ▶ 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 등을 상표로 사용한 때에는 타인 자신의 불쾌감의 유무 또는 사회통념상 타인의 인격권의 침해 여부를 불문하고 본호를 적용한다. ()
- ▶ 사회통념상 국내 일반수요자 또는 관련 거래업계에서 타인의 성명·명칭 등이 저명하면 되고, 타인 그 자체는 저명할 필요가 없다. ()
- ▶ 타인이라 함은 현존하는 국내의 자연인 또는 법인은 물론이고 국내 일반수요자 또는 관련 거래업계에서 일반적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는 현존하는 외국의 자연인 또는 법인도 포함된다. ()
- ▶ 저명한 연예인 그룹명칭이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를 제3자가 임의로 출원한 경우 본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 ▶ 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 등 또는 이들의 약칭이 상표의 부기적인 부분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본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

[제34조 제1항 제7호]

- ①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라도, 그 타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등록을 받을 수 있다. ()
- ② 당해 출원상표보다 후출원된 상표라도 당해 출원상표보다 먼저 등록된 경우라면, 당해 출원상표에 대해서 제34조 제1항 제7호가 적용될 수 있다. ()
- ③ 선출원된 타인의 등록상표가 공유이고, 후출원된 상표의 출원인이 그 공유자 중 1인인 경우에도 제34조 제1항 제7호를 적용한다. ()

기출지문

- ▶ 후출원상표의 출원당시에 이미 등록되어 있던 선등록인용상표가 후출원상표의 출원일 전부터 계속해서 3년간 불사용되었다면 후출원상표는 본 호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 ▶ 선출원에 의한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라도 그 지정상품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가 아니면 본 호에 해당되지 않는다. ()
- ▶ 선출원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그와 유사한 후출원상표의 출원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선출원등록상표와 유사한 후출원상표의 출원은 본 호가 적용된다. ()
- ▶ 후출원상표가 널리 사용되어 현저하게 알려진 상표라 하더라도 선출원등록상표와 상표 및 그 지정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면 본 호가 적용된다. ()
- ▶ 제34조 제1항 제7호의 거절이유는 선등록상표의 권리자로부터 선등록상표를 양수 받은 후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극복할 수 있다. ()
- ▶ 제34조 제1항 제7호의 거절이유는 출원상표가 등록되는 것을 허락한다는 승낙서를 선등록상표의 권리자에게 받은 후 이를 첨부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극복할 수 있다. ()
- ▶ 제34조 제1항 제7호의 거절이유는 선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표법 제119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 제1항 제3호에 기한 취소심판을 청구한 후 의견서에 심사보류를 요청하는 방법으로 극복할 수 있다. ()
- ▶ 인용표장의 권리자가 甲 및 乙이고 출원상표의 권리자는 甲인 경우, 인용표장의 권리자는 제34조 제1항 제7호에서의 타인에 해당한다. ()
- ▶ 상품과 서비스업간에 동종성이 인정되어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상품에 관한 상표와 서비스업에 관한 상표간에도 제34조 제1항 제7호가 적용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이다. ()

[제34조 제1항 제9호]

- ①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는 제34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 ()
- ② 제34조 제1항 제9호에 있어서, 타인이라 함은 익명의 존재로서 추상적인 출처를 의미하는 것이다. ()
- ③ 제34조 제1항 제9호는 국내 주지상표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으로, 국내에서 주지한 상표라고 하더라도, 그 상표가 표시된 물건이 국내에서 유통되는 것이 아니라면, 본호를 적용할 수 없다. ()
- ④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캐릭터나 영화의 제명이라도, 국내에서 주지하다면 본호의 인용상표가 될 수 있다. ()
- ⑤ 주지한 캐릭터나 영화의 제명을 사용하여 상품화 사업을 한 경우에는 제34조 제1항 제9호의 주지상표로 볼 수 있다. ()

기출지문

▶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9호는 타인의 주지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의 등록을 배제하는 것으로서 그 지정상품 또한 타인의 주지상표의 사용상품과 동일·유사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

[제34조 제1항 제11호]

- ① 선사용상표의 권리자는 개인이나 법인이 될 수 있고, 사회적인 실체는 제34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선사용상표의 권리자가 될 수 없다. ()
- ② 경제적·조직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계열사들로 이루어진 기업그룹이 분리된 경우에는, 기업그룹의 선사용표장을 채택하여 등록 사용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 선사용표장에 화제된 신용의 주체로 인식됨과 아울러 선사용표장을 승계하였다고 인정되는 계열사들을 선사용표장의 권리자로 보아야 한다. ()
- ③ 제34조 제1항 제11호 전단은 출원상표가 선사용상표와 비유사하거나,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이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과 비유사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
- ④ 제34조 제1항 제11호는 저명상표의 사용상품과 혼동의 가능성이 없는 전혀 비유사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출원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

상표법 1차 기본강의 쪽지시험 8회

(2023. 5.10. 기본강의 복습)

[제34조 제1항 제12호]

- ①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으로 인한 수요자 기만의 염려가 있으려면, 선사용상표가 반드시 저명하여야 한다. ()
- ②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으로 인한 수요자 기만의 염려가 있으려면, 출원상표가 선사용상표와 반드시 동일 또는 유사해야 하고 비유사한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
- ③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으로 인한 수요자 기만의 염려가 있으려면,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과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이 비유사하더라도 적용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

기출지문

- ▶ 판례는 인용상표가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만 알려져 있는 경우에도, 만일 어떤 상표가 인용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고 또한 그 상표가 인용상표의 사용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된 경우 못지 않을 정도로 인용상표권자에 의하여 사용되는 것이라고 오인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라면,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본다. ()
- ▶ 수요자 기만의 염려가 있는 상표와 관련하여, 판례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핸드백과 여자구두(단화)에 각각 사용되는 경우에는 동일 또는 유사 상품에 사용된 경우에 못지 않게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
- ▶ 출원상표와 동일, 유사한 타인의 상표가 주지·저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출원상표가 제34조 제1항 제12호의 수요자 기만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할 수 있다. ()
- ▶ 인용상표의 사용상품 또는 지정상품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경우에만 출원상표가 제34조 제1항 제12호의 수요자 기만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 ()

[제34조 제1항 제13호]

- ① 제34조 제1항 제13호는 국내에서 인식도를 구비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
- ② 제34조 제1항 제13호는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과 지정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한지 여부를 따질 여지가 없다. ()

[제34조 제1항 제15호]

- ①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상품 또는 그 상품의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꼭 필요한(서비스의 경우에는 그 이용과 목적에 꼭 필요한 경우) 입체적 형상, 색채, 색채의 조합, 소리 또는 냄새로 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 ()

[제34조 제1항 제16호]

- ①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내의 포도주 또는 종류주의 산지에 관한 지리적 표시로서 구성되거나 그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는 상표로서 포도주, 종류주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려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 ()
- ②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내의 포도주 또는 종류주의 산지에 관한 지리적 표시로서 구성되거나 그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는 상표로서 포도주, 종류주에 사용하려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지리적 표시의 정당한 사용자가 해당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출원한 경우에는 등록을 받을 수 있다. ()
- ③ 제34조 제1항 제16호는 지리적 출처에 관하여 혼동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도 적용이 될 수 있다. ()

기출지문

▶ 제34조 제1항 제16호(포도주 및 종류주의 산지에 관한 지리적 표시)에서 규정하는 포도주 및 종류주의 산지에 관한 지리적 표시라 함은 산지를 그 지역의 문자로 표시한 것뿐만 아니라 한글 기타 그의 번역 및 음역을 포함한다. ()

[제34조 제1항 제17호]

- ①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7호는 “「식물신품종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타인의 품종명칭과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그 품종명칭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
- ② 「식물신품종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품종명칭과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그 품종명칭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고, 이와 같은 법리는 식물신품종보호법상의 등록도니 품종보호권자가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라도 마찬가지이다. ()

상표법 1차 기본강의 쪽지시험 9회

(2023. 5.11. 기본강의 복습)

[제34조 제1항 제18호]

- 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지리적 표시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 ()
- ② 제34조 제1항 제18호가 적용되지 위해서는 반드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지리적 표시일 것을 요한다. ()
- ③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으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지리적 표시의 권리자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출원하는 경우 제34조 제1항 제18호의 거절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일반상표로서 출원하는 경우 제34조 제1항 제18호의 거절이유에 해당한다. ()

[제34조 제1항 제19호]

- ①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간 또는 다자간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동일·유사한 상표 또는 그 지리적 표시로 구성되거나 그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는 상표로서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 ()

[제34조 제1항 제20호]

- ① 제34조 제1항 제20호는 출원인에게 부정한 목적이 있을 것이 요구된다. ()
- ② 유명한 방송프로그램명칭을 모방한 상표등록출원의 경우에는 제34조 제1항 제20호를 적용할 수 없다. ()

[제34조 제1항 제21호]

- ① 제34조 제1항 제21호는 출원인에게 부정한 목적이 있을 것이 요구된다. ()
- ② 출원인을 계약 당사자와 명의를 달리한 것이 본호 적용 회피를 위한 형식적인 것에 불과 한 경우에도 제34조 제1항 제21호를 적용할 수 있다. ()

[제35조]

- ① 제35조는 동일인간에도 적용이 될 수 있다. ()
- ② 2이상의 출원이 동일한 날에 출원된 경우에는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하나의 출원인만이 그 상표에 관하여 등록을 받을 수 있고, 협의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느 누구도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
- ③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명문의 규정에 의해서 선출원의 지위가 소멸하는 것이다. ()

[제37조]

- ① 상표등록출원일은 출원서가 특허청장에게 도달한 날로 한다. ()
- ② 상표등록출원서가 한글로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허청장은 보완명령을 하여야 하고,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보완을 한 경우에는 상표등록출원서가 특허청장에게 도달한 날을 상표등록출원일로 본다. ()

[제38조]

- ① 상표등록출원인은 특허청장이 고시한 상품에 대한 명칭만을 지정상품으로 할 수 있다. ()
- ② 상품 류구분이 동일한 상품 상호간에는 유사한 상품으로 본다. ()
- ③ 상표등록출원인은 ‘도매업’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
- ④ 상표등록출원인은 ‘백화점업, 편의점업, 대형할인마트업, 슈퍼마켓업’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
- ⑤ 동일인이 유사한 상표를 유사한 상품에 대해서 2이상의 출원을 한 경우에는 제38조 제1항 위

반으로 본다. ()

- ⑥ 상표등록출원서에 동일한 상품을 중복하여 기재한 경우에는 제38조 제1항 위반으로 본다.
()
- ⑦ 제38조 제1항에 위반된 경우에는 거절이유에 해당하나, 이의신청이유나 상표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제53조]

- ① 상표등록출원은 심사청구순서에 따라 심사를 하여야 하나, 우선심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
- ② 우선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출원인이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어야 할 것이고, 심사관이 직권으로 우선심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없다. ()
- ③ 출원공고 후 출원인 아닌 자가 출원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으로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우선심사 신청 사유에 해당한다. ()
- ④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하는 출원의 경우에는 우선심사 신청 사유에 해당한다. ()

상표법 1차 기본강의 쪽지시험 10회

(2023. 5. 12. 기본강의 복습)

[절차계속신청제도]

- ① 절차계속신청제도를 활용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기 하기 위해서는 출원인에게 의견서 제출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

[출원공고제도]

- ① 심사관은 출원에 대해서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일부 지정상품에 대해서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일부지정 상품에 대한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에는 출원공고를 하여야 한다. ()
- ② 출원공고결정 후 출원인이 출원공고 된 상표등록출원을 제45조에 따라 둘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으로 분할한 경우로서 그 분할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원공고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③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하여 취소의 심결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미 출원공고 된 사실이 있고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원공고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④ 특허청장은 출원공고결정이 있는 경우 출원인에게 출원공고결정등본을 송달하고, 출원공고를 하여야 한다. ()
- ⑤ 특허청장은 출원공고를 한 날부터 30일간 상표등록출원 서류 및 그 부속 서류를 특허청에서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자진보정]

- ① 제40조 보정(출원공고결정 전의 보정)은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일부터 1개월 이내”에도 할 수 있다. ()
- ② 제40조 보정(출원공고결정 전의 보정)은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고 그 심판단계에서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간에는 물론, 절차계속신청에 따른 기간에도 보정을 할 수 있다. ()

- ③ 제40조 보정(출원공고결정 전의 보정)은 최초의 상표등록출원과 비교하였을 때, 그 요지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
- ④ 제41조 보정(출원공고결정 후의 보정)은 최초의 상표등록출원과 비교하였을 때, 그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상표 및 상품을 보정할 수 있다. ()
- ⑤ 제40조 보정(출원공고결정 전의 보정)과 제41조 보정(출원공고결정 후의 보정)을 하여 받아들여지면, 보정된 내용대로 상표등록출원이 되는 것으로 본다. ()
- ⑥ 상기 ⑤의 보정의 효과는 상표법상 명문의 규정에서 인정되는 것이다. ()
- ⑦ 심사관은 보정된 내용이 최초 상표등록출원의 내용과 동일성을 상실하여, 요지변경이라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그 보정을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
- ⑧ 출원공고결정 후 보정에 대해서, 보정각하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출원인은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 ⑨ 출원인이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심사관은 그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심사를 중지할 수 있다. ()
- ⑩ 상표권 설정등록 후에, 제40조 보정(출원공고결정 전의 보정)이 요지변경인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출원은 그 보정서를 제출한 때에 상표등록출원을 한 것으로 본다. ()
- ⑪ 상표권 설정등록 후에, 제41조 보정(출원공고결정 후의 보정)이 요지변경인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출원은 그 보정서를 제출한 때에 상표등록출원을 한 것으로 본다. ()
- ⑫ 지정상품의 감축은 요지변경이 아니므로, 지정상품 중 일부를 삭제하는 보정은 가능하지만, 삭제한 지정상품을 다시 추가하는 보정은 불가능하다. ()
- ⑬ 지정상품 중 포괄명칭은 그대로 두고 그 포괄명칭에 속하는 개별상품에 대한 명칭을 추가하는 것은 지정상품의 감축이 아니므로 요지변경에 해당한다. ()
- ⑭ 보정이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최초의 출원서 기재사항과 동일 또는

- 유사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 ⑯ 상표의 부기적인 부분의 삭제는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

[직권보정]

- ① 심사관은 출원공고 할 때 출원서에 적힌 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
- ② 심사관은 '지정상품 또는 그 류구분' 뿐만 아니라, 출원서에 적힌 사항에 대해서 직권으로 보정을 할 수 있다. ()
- ③ 출원인은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드릴 수 없는 경우에는 출원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심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④ 출원인이 직권보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직권보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된다. 다만 직권으로 보정된 내용에 대한 출원공고결정은 여전히 유효하다. ()

상표법 1차 기본강의 쪽지시험 11회

(2023. 5. 17. 기본강의 복습)

[변경출원]

- ① 상표, 단체표장, 증명표장, 업무표장 상호간에 변경출원이 가능하지만,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나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은 변경출원이 허용되지 않는다. ()
- ②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을 상표등록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상표등록출원을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으로 변경할 수는 없다. ()
- ③ 변경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원출원은 취하간주 된다. ()

[분할출원]

- ① 분할출원의 출원일은 원출원의 출원일로 소급되나, 조약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지 아니한 원출원을 기초로 한 분할출원에 대해서 조약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우선권 주장과 증명서류의 제출기간은 분할출원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 ②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하고 적법하게 증명서류가 제출된 원출원을 기초로 한 분할출원에 대해서 조약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우선권의 이익을 향유하겠다는 주장은 분할출원과 동시에 하여야 하고 증명서류는 분할출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 ③ 분할출원이 상표등록 거절결정이 된 경우에는 원출원도 거절결정 될 것이다. ()
- ④ 상표등록출원인은 출원을 분할함에 있어서, 유사한 상품을 함께 분할하여야 한다. ()
- ⑤ 상표등록출원인은 지정상품을 분할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상품을 함께 분할하여 이전하여야 하고, 이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거절이유 및 상표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한다. ()
- ⑥ 상표권자가 지정상품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상품을 함께 분할하여야 한다. ()
- ⑦ 상표권자는 상표권이 소멸한 경우라도, 지정상품을 분할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

- ⑧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을 분할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상품을 함께 분할하여 이전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상표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한다. ()

기출지문

- ▶ 원출원의 지정상품이 포괄명칭으로 된 경우 그 명칭을 구체적인 상품으로 분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 ▶ 출원분할은 상표법 제40조 및 상표법 제41조의 보정이 가능한 기간 내에 할 수 있다. ()

[조약 우선권]

- ① 조약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자는 2이상의 1국 출원을 기초로 할 수도 있다. ()
- ② 조약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지정상품이 1국 출원의 지정상품에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
- ③ 조약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자는 출원서에 그 취지와 최초로 출원한 국가명 및 출원의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하고, 이는 반드시 상표등록출원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
- ④ 조약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자는 상표등록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우선권 주장에 관련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 ⑤ 상표법상 명문의 규정에서는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효과를 제35조만 인정하고 있다. ()

기출지문

- ▶ 원출원이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과 출원 시의 특례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 분할출원에 대한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 및 그 증명서류 제출의 경우와 출원 시의 특례 적용취지의 제출 및 그 증명서류의 제출은 출원일의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고 분할출원일을 기준으로 한다. ()
- ▶ 상표등록출원시 상표등록출원서에 우선권 주장의 취지와 최초로 출원한 국명 및

출원연월일을 기재하지 못한 경우에도 우선권 증명서류 제출기간 내에 우선권 증명서류 제출과 동시에 이를 보정할 수 있다. ()

▶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동맹국 출원이 무효·취하·포기 또는 거절결정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우선권 주장의 기초로서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

▶ 조약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였으나 우선권 증명서류의 제출기간을 도과하여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출원은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출원자체가 거절된다. ()

[출원 시의 특례]

- ① 제47조의 출원 시의 특례에 따라 출원일의 소급효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박람회의 출품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표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
- ② 제47조의 출원 시의 특례에 따라 출원일의 소급효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출원시에 그 취지를 주장하여야 하고, 출원시에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할 수 없다. ()
- ③ 제47조의 출원 시의 특례에 따라 출원일의 소급효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상표등록출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 ④ 제46조와 제47조를 동시에 주장하는 경우, 박람회 출품일로부터 6개월인지 여부는 제1국 출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손실보상청구권]

- ① 손실보상청구권은 상표등록출원인에게 인정되는 특수한 권리로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할 수 있다. ()
- ② 손실보상청구권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무단 사용자에 대한 서면 경고를 하여야 하나, 무단 사용자가 악의인 경우에는 반드시 경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 ③ 출원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자에게 서면으로 경고하고, 향후에 손실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서면 경고를 받은

자에게 무단사용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 ()

- ④ 손실보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상표권이 설정등록 되어야 할 것이다. ()
- ⑤ 손실보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출원인에게 업무상의 손실이 발생되어야 하므로, 출원인은 최소한 출원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야 한다. ()
- ⑥ 손실보상청구권의 행사는 상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 ⑦ 무단사용자가 서면경고를 받고 더 이상 무단사용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손실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 ⑧ 등록상표에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 손실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없다. ()

기출지문

- ▶ 손실보상청구권은 제3자에게 공시의 의미를 갖는 출원공고가 있는 후에 반드시 서면에 의한 경고를 하여야 발생하며, 출원공고가 있기 전에는 발생할 수 없다. ()
- ▶ 출원인은 서면에 의한 경고 후 상표등록결정등본을 송달 받은 날 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당해 상표의 사용에 관한 업무상 손실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
- ▶ 손실보상청구권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일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제3자가 출원상표를 사용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 ▶ 손실보상청구권은 손해배상청구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격을 가진 정지조건부의 준물권적권리로서 상표권 설정등록이 있는 후가 아니면 행사할 수 없다. ()

[이의신청]

- ① 이해관계인에 한해서, 출원공고가 된 상표등록출원에 거절이유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 ② 이의신청은 출원공고결정이 있는 날부터 2개월까지 할 수 있다. ()

- ③ 이의신청의 기간은 어떠한 경우라도 연장을 할 수 없다. ()
- ④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에 적은 이유와 증거를 보정할 수 있다. ()
- ⑤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기간은 당사자의 청구나 직권에 의해서 1개월 이내에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
- ⑥ 이의신청은 심사관 3인 또는 5인으로 구성된 심사관합의체에서 심사 및 결정을 한다. ()
- ⑦ 심사관합의체는 이의신청에 관하여 출원인이나 이의신청인이 주장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해서도 심사할 수 있고, 이 경우 출원인이나 이의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이유에 관하여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 ⑧ 심사관합의체는 둘 이상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병합하거나 분리하여 심사할 수 있다. ()
- ⑨ 심사관합의체는 이의신청인이 이의신청기간 내에 그 이유 및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기간이 지난 후에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
- ⑩ 심사관은 직권으로 거절결정을 할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이에 대해서 결정을 하지 아니한다. ()
- ⑪ 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그 자체에 대해서는 불복을 할 수 없다. ()

상표법 1차 기본강의 쪽지시험 12회

(2023. 5. 18. 기본강의 복습)

[거절결정과 등록결정]

- ①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원된 지정상품 일부에만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절이유가 있는 상품에 대해서만 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
- ②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표등록결정을 하여야 하고, 이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 ③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된 지정상품 중 일부에만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절이유가 있는 지정상품에 대해서는 거절결정이유를 통지하고, 그 거절결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거절이유가 없는 지정상품에 대해서는 등록결정을 하여야 한다. ()
- ④ 심사관은 상표등록여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의 등본을 출원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거절결정과 등록결정]

- ① 거절결정을 받은 자는 그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을 날부터 3개월(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출원인은 필요에 따라 상표 또는 상품을 보정할 수 있다. ()
- ② 출원인은 재심사 청구와 함께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③ 심사관은 상표등록결정을 한 출원에 대해서 명백한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신청으로 그 상표등록출원을 다시 심사할 수 있다. ()
- ④ 심사관은 상표등록결정을 한 출원에 대해서 직권으로 재심사를 하려면 등록결정을 취소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⑤ 심사관은 상표등록거절결정한 출원에 대해서도 직권으로 재심사하여 상표등록결정을 할 수 있다. ()

[상표등록료 등]

- ① 상표권 설정등록, 존속기간 갱신등록,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그 등록료를 2회로 분할하여 낼 수 있다. ()

[존속기간갱신등록제도]

- ①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단독으로도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
- ②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또는 만료 후 6개월 이내에 존속기간 갱신등록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등록된 경우에는 그 등록일부터 5년 이내 갱신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 ③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이 된 경우에는 새로운 권리가 발생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 ④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면, 존속기간갱신등록이 되기 전이라도, 갱신이 된 것으로 본다. ()
- ⑤ 존속기간갱신등록이 되면, 그 효과는 원등록의 효력이 끝나는 날에 갱신등록의 효력이 발생한다. ()
- ⑥ 존속기간갱신등록료는 2회로 분할 납부할 수 있고, 1회차만 납부한 경우에는 5년이 갱신되는 것으로 된다. ()
- ⑦ 등록상표에 2회 존속기간의 갱신등록이 이루어진 후에 1회 갱신등록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1회 갱신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2회 갱신등록도 없는 것으로 된다. ()
- ⑧ 등록상표가 부적법하게 소멸등록된 경우에는 회복등록신청할 수 있다. ()
- ⑨ 등록상표가 소멸등록이되면 상표권은 소멸하나, 다시 회복등록이 된 경우에는 회복등록이 된 때부터 다시 등록상표의 존속기간이 진행되는 것이다. ()
- ⑩ 상표등록취소심결이 확정으로 소멸등록이 이루어지고, 확정된 취소심결이 부적법하여 무효인 경우에 있어서, 상표권자가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기간을 경과한 경우라도 회복등록신청을

하고 갱신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특허청장은 회복등록을 하고 갱신등록을 하여야 할 것이다. ()

기출지문

- ▶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은 상표권자뿐만 아니라 전용사용권자도 할 수 있다. ()
- ▶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을 무효로 하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 상표권은 갱신되기 전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종료하였을 때 소멸한다. ()

[지정상품추가등록제도]

- ① 등록상표에는 지정상품을 추가할 수 있고, 출원상표에는 지정상품을 추가할 수 없다. ()
- ② 지정상품을 추가할 때는 원등록 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을 추가하여야 한다. ()
- ③ 추가등록된 지정상품의 존속기간의 만료일은 원등록의 존속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
- ④ 추가등록출원이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원출원도 거절될 것이다. ()
- ⑤ 추가등록출원이 등록된 경우에는 새로운 등록번호가 부여된다. ()

[상품분류전환등록제도]

- ①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은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또는 만료 후 6개월 이내에 할 수 있다. ()
- ② 전환등록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신청이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신청기간의 만료일이 속하는 존속기간의 만료일에 상표권은 소멸한다. ()
- ③ 전환등록의 대상이 되는 지정상품으로서 그 신청서에 적지 아니한 상품에 대한 상표권은 신청서에 적은 지정상품이 전환등록이 되는 날에 소멸한다. 다만, 그 전환등록이 상표권의 존속기간의 만료일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의 만료일에 소멸한다. ()

[상표권의 효력]

- ① 등록상표의 존속기간은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날부터 설정등록일 후 10년이고, 그 기간은 10년씩 갱신할 수 있다. ()
- ② 상표권자는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독점한다. ()
- ③ 상표권은 이전할 수 있고, 지정상품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유사한 상품을 함께 이전하여야 하며, 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상표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한다. ()
- ④ 상표권자는 상표권을 지정상품마다 분할할 수 있고, 상표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분할 할 수 있는 경우가 없다. ()
- ⑤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이 2이상인 경우에는 그 상표권을 지정상품마다 분할할 때에는 유사한 상품을 함께 분할하여야 한다. ()

상표법 1차 기본강의 쪽지시험 13회

(2023. 5. 19. 기본강의 복습)

[권리 소진]

- ①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표시한 물건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상품에 대해서는 권리가 소진되어, 제3자가 그 상품을 다시 양도 등을 하는 경우에도, 상표권의 침해가 되지 아니한다. ()
- ② 상표권이 소진된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그 상품을 가공이나 수선을 하여 실질적으로 재생산되었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칠 수 있다. ()
- ③ 지정상품, 존속기간, 지역 등 통상사용권의 범위는 통상사용권계약에 따라 부여되는 것이므로 이를 넘는 통상사용권자의 상표 사용행위는 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
- ④ 통상사용권자가 계약상 부수적인 조건을 위반하여 상품을 양도한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양도행위로서 권리소진의 원칙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고,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상표의 주된 기능인 상표의 상품출처표시 및 품질보증 기능의 훼손여부, 상표권자가 상품 판매로 보상을 받았음에도 추가적인 유통을 금지할 이익과 상품을 구입한 수요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종합하여 상표권의 소진 여부 및 상표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진정상품병행수입]

- ① 진정상품병행수입으로서 상표권의 침해를 면하기 위해서는, 수입되는 상품과 국내 등록상표가 부착된 상품의 품질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어야 한다. ()
- ② 진정상품병행수입으로서 침해를 면하기 위해서는 상품의 품질이 동일하여야 하므로, 무상수리나 교환과 같은 서비스도 동일하여야 할 것이다. ()
- ③ 국내 상표권자와 외국 상표권자가 다른 경우라면, 진정상품병행수입이 허용될 수 있는 경우가 없다. ()

- ④ 진정상품을 병행수입행위를 하는 자가 그 상품을 소량으로 나누어 임의로 제작한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표시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항상 국내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
- ⑤ 병행수입업자가 진정상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광고행위를 하는 경우라면, 그 행위는 영업주체의 혼동을 일으킬 수도 있으므로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다. ()

기출지문

▶ 진정상품병행수입업자가 타인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진정상품인 화장품을 보다 작은 용량의 용기에 재병입하면서 그 용기에 임의로 제작한 그 등록상표를 표시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의 침해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권리남용]

- ① 상표권 행사가 공정한 경쟁질서와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수요자 사이에 혼동을 초래하거나, 신의칙에 위배되는 등 법적인 보호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
- ② 상표등록이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상표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
- ③ 침해소송을 담당 법원은 상표권자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항변이 없는 경우에도, 그 당부를 살피기 위한 전제로서 상표등록의 무효 여부에 대하여 심리·판단 할 수 있다. ()
- ④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며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알려지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용을 용인한다면 상표법이 취하고 있는 등록주의 원칙의 근간을 훼손하게 되므로, 상표 사용자를 상대로 한 상표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
- ⑤ 상표권자가 자기의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라도, 타인의 주지상품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

기출지문

- ▶ 상표권 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주관적 요건은 권리남용 성립의 필수요건이 아니다. ()

상표법 1차 기본강의 쪽지시험 14회

(2023. 5. 24. 기본강의 복습)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 ① 제90조는 등록상표에 관한 규정이 아니고, 사용상표에 관한 규정이고, 사용상표가 결합상표인 경우에는 그 구성 중 일부분에도 적용이 될 수 있다. ()
- ② 제90조 제3항 소정의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표를 사용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
- ③ 자기의 성명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는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는 한 상표권의 침해를 면할 수 있다. ()
- ④ 제90조 제1항 제1호는 그 사용자가 자기의 상호를 상표로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
- ⑤ 제90조 제3항에 따라 부정경쟁의 목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표권자가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등록상표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져야 한다. ()
- ⑥ 제90조 제1항 제2호는 "상품의 보통명칭이나 품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 ⑦ 제90조 제1항 제2호는 확인대상상표의 구체적인 의미를 직감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태양에 비추어 품질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되었음을 직감할 수는 있다면 적용될 수 있다. ()
- ⑧ 제90조 제1항 제3호(입체적 형상이 식별력이 없는 경우)가 적용되기 위해서, 등록상표가 반드시 입체상표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 ⑨ 상표법 제90조 제3항에 따라 상표를 사용하는 자에게 부정한 목적이란, 상표권자의 신용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을 말하고 단지 등록상표임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 ⑩ 등록상표의 구성 중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라도 상표를 등록하기 전에 그 지정상품에

대해서 사용에 의해서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90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

- ⑪ 등록상표의 구성 중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 지정상품에 대해서 사용에 의해서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라도, 그 식별력의 취득이 등록 후에 이루어졌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90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된다. ()
- ⑫ 제90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는 제33조 제1항 각호의 식별력이 없는 상표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제33조 제1항 제5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상표가 착오로 등록된 경우라면, 제3자는 제90조에 따라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하다. ()

기출지문

- ▶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적법하게 등록된 후에 당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보통명칭화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또는 그 지정상품의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으로 구성된 상표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
- ▶ 상표법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 제2항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받아 등록된 상표라 하더라도 그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의 품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다. ()

[타인의 디자인권 등과 관계]

- ① 제92조 제1항에 따라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함에 있어서 저작권자 등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라면, 제3자의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해서 상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저작권자 등의 동의가 필요하다. ()

상표법 1차 기본강의 쪽지시험 15회

(2023. 5. 25. 기본강의 복습)

[사용권]

- ① 제99조 제1항에 따른 선사용권을 주장하는 자는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음에 대해서 입증할 책임이 있다. ()
- ② 제99조 제2항에 따른 선사용권을 주장하는 자는 상표등록출원 전에 사용에 의해서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인식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할 필요가 없다. ()
- ③ 제9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사용권을 가진 자에게,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혼동방지표시청구권을 가진다. ()
- ④ 제9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사용권은 그 지위를 승계한 자도 가질 수 있다. ()

[상표권 이전, 공유 등]

- ① 상표권 이전등록청구권자가 실제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전등록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간이 진행되지 않는다. ()
- ② 상표권 이전등록청구권자가 실제로 상표를 사용한 결과 주지상표가 되는 경우에는 이전등록의무자의 소멸시효의 주장이 제한된다. ()
- ③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민법상의 공유 규정이 준용될 수 있다. ()
- ④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전원이 심판의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되어야 한다. ()

[상표권의 소멸]

- ① 상표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상속인이 상표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표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에 상표권이 소멸한다. ()

- ②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상표권은 법인의 청산종결등기일(청산종결등기가 되었더라도 청산사무가 사실상 끝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사무가 사실상 끝난 날과 청산종결등기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 중 빠른 날. 이하에서 같다.)까지 상표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종결등기일의 다음 날에 소멸한다. ()

[상표권 침해]

- ①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상표권 침해로 본다. 이때 교부·판매의 대상은 상표 그 자체를 말한다. ()
- ② 침해 주장을 받은 자가 수개의 표장을 개별적으로 각각 상표등록을 받고 개별적인 표장을 조합하여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조합된 표장이 자타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별도의 식별력을 가지게 되고, 다른 상표권자가 조합된 표장 전체 형태의 사용에 대하여 상표권 침해를 묻는 경우라면, 침해 주장을 받은 자의 각각의 상표권에 기초한 사용권에 의해서 상표권 침해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 ③ 상표권 침해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 ④ 침해금지청구 소송에서는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침해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상표법 1차 기본강의 쪽지시험 16회

(2023. 5. 26. 기본강의 복습)

[손해배상청구]

- ① 등록상표임을 표시한 상표권을 침해한 자에게는 등록상표임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
- ② 등록상표임을 표시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상표권을 침해한 자에게는 과실이 추정된다. ()
- ③ 상표권 침해에 있어서, 침해자의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할 수 있고, 이때 침해자의 이익액이라 함은 침해로 얻은 수익에서 침해로 인해 추가로 들어간 비용을 공제한 금액인 순이익을 말한다. ()
- ④ 상표권자가 제110조 제3항에 따라 추정되는 손해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상표권자가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야 한다. ()
- ⑤ 제110조 제4항에 따라 등록상표의 사용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는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 ⑥ 제111조에 따라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침해자가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여야 하고, 유사한 상표나 상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다. ()
- ⑦ 제111조에 따른 법정손해배상청구는 50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다. ()
- ⑧ 상표권자가 제109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상표권자는 법원이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그 청구를 제111조의 법정손해배상청구로 변경할 수 있다. ()

[기타 벌칙]

- ①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는 반의사불벌죄이다. ()

[심판]

- ① 특허심판원장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수 있으나, 그 심판청구 이유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나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② 상표등록무효심판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언제나 누구든지 같은 사실 및 같은 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 ③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인용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동일한 확인대상표장으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 거절결정불복심판]

- ① 제40조 보정 또는 제41조 보정에 대한 보정각하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 ② 당사자계 심판과 달리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는 보조참가가 허용되지 않고, 그 심결 취소소송에서도 마찬가지이다. ()

[상표등록무효심판]

- ① 등록상표에 대해서 상표등록무효심판이 청구된 경우, 무효심판이 청구된 지정상품 중 1개라도 무효사유가 있으면, 무효심판이 청구된 지정상품 전부에 대해서 무효로 하여야 한다. ()

상표법 1차 기본강의 쪽지시험 17회

(2023. 5. 31. 기본강의 복습)

[제119조 제1항 제1호]

- ① 상표권자가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대상상표와 관계에서 상품출처에 관한 혼동의 가능성을 인식하여야만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될 수 있다. ()
- ② 등록상표를 그대로 사용한 경우보다 실사용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상상표와의 관계에서 수요자가 상품 출처에 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더 커지게 되었다면, 등록 상표는 실사용상표와 유사한 상표로 볼 수 있다. ()
- ③ 복수의 유사상표를 사용하다가 그 중 일부만 등록한 상표권자가 미등록의 사용상표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타인의 상표와의 관계에서 등록상표만을 사용한 경우에 비하여 수요자가 상품 출처를 오인·혼동할 우려가 더 커지게 되었다면, 실사용상표를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로 볼 수 있다. ()
- ④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등록상표가 상품 출처에 관한 혼동의 대상이 되는 상표와 유사할 필요가 있다. ()
- ⑤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상표권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부정한 사용이어야 할 것이다. ()
- ⑥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1호는 상표권자의 부정사용을 규제함으로써, 상품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 타인 상표의 명성이나 신용에 편승하려는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하여 거래자와 수요자의 이익보호는 물론 다른 상표권자의 영업상의 신용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
- ⑦ 상표권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양수인의 부정사용은 물론, 양도인의 부정사용도 상표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한다. ()
- ⑧ 상품출처혼동의 대상이 되는 대상상표가 오로지 식별력이 없는 표장만으로 된 경우라도, 본호가 적용될 수 있다. ()
- ⑨ 제119조 제1항 제1호의 취소심판은 취소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

야 한다. ()

- ⑩ 부정사용으로 인한 취소심판(제119조 제1항 제1호)에서 등록상표 또는 유사상표를 사용한 것인지는 불사용취소심판(제119조 제1항 제3호)에서의 상표 동일성 판단기준과 마찬가지로 판단하여야 한다. ()
- ⑪ 상품의 품질의 오인이나 타인의 업무에 관계되는 상품과의 혼동은 현실적으로 오인·혼동이 생긴 경우뿐만 아니라 오인·혼동이 생길 염려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면 족하다. ()

기출지문

- ▶ 부정사용을 이유로 한 상표등록취소심판이 청구된 후 심판청구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어진 경우 특허심판원은 기각하는 심결을 하여야 한다. ()
- ▶ 상표권자가 지정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수요자로 하여금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에는 그 타인의 상표가 주지·저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상표등록은 부정사용을 이유로 한 취소심판에 의하여 취소될 수 있다. ()

[제119조 제1항 제2호]

- ① 통상사용권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그 중 1인만의 부정사용으로도 제11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할 수 있다. ()
- ② 전용사용권자나 통상사용권자가 부정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제119조 제1항 제2호의 상표등록취소사유 뿐만 아니라, 상표법 제120조의 사용권등록취소사유에도 해당할 수 있다 ()
- ③ 전용사용권자나 통상사용권자가 부정사용을 하는 경우라도, 상표권자가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에는 제120조의 사용권등록취소심판에서의 취소를 면할 수 있다. ()
- ④ 상표권이 이전된 경우 종전 상표권자나 그로부터 상표사용을 허락받은 사용권자도 제119조 제1항 제2호의 ‘타인’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
- ⑤ 상표권이 이전된 후 상표권자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은 사용권자가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종전 상표권자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이때에는 상표권자가 금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108①(1), 107①)와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89조)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원칙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부정한 사용으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제119조 제1항 제2호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기출지문

- ▶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가 고의로 지정상품에 등록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의 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에만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상표법 1차 기본강의 쪽지시험 18회

(2023. 6. 1 기본강의 복습)

[제119조 제1항 제3호]

- ① 심판청구시에는 불사용 기간이 완성되지 아니하였으나 심판청구사건의 심리종결 전에 불사용 기간이 완성된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은 제119조 제1항 제3호(불사용으로 인한 취소심판)에 의하여 취소될 수 있다. ()
- ② 상품의 제조 및 판매에 있어서 타 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표권자가 그와 같은 허가 등이 없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하여 판매 등을 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사용으로 불사용 취소를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경우는 없다. ()
- ③ 제119조 제1항 제3호는 일정한 요건만 구비하면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상표를 등록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록주의의 폐해를 시정하고 타인의 상표선택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상표권자 또는 사용권자에게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할 의무를 부과하고 일정기간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에 대한 제재수단이 된다. ()
- ④ 상표의 사용에는 거래사회 통념상 식별표지로서 상표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 변형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이고, 이 경우 등록상표가 반드시 독자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할 이유는 없으므로 상표권자 등이 등록상표에 다른 문자나 도형 부분 등을 결합하여 상표로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등록상표가 상표로서의 동일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는 한 등록상표의 사용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
- ⑤ 본호에서의 '정당한 이유'에는 질병,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에 의하여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법률상의 규제 등에 의하여 부득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을 국내에서 일반적, 정상적으로 거래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 ()
- ⑥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상표등록취소심판 청구인은 청구된 지정상품 중 일부에 대한 취소심판을 취하할 수 없다. ()
- ⑦ 상표권자가 외국에서 자신의 등록상표를 상품에 표시하였을 뿐 국내에서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한바 없다고 하더라도, 제3자에 의하여 국내에 유

통되는 경우에 상표등록취소를 면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

- ⑧ 등록상표가 애당초 식별력 없는 상표인지 여부는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등록상표의 사용' 인지에 대한 판단시 고려되어야 한다. ()
- ⑨ 유통의 가능성이 없는 이른바 '광고매체가 되는 물품'은 비록 그 물품에 상표가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상표 이외의 다른 문자 등에 의하여 광고하고자 하는 상품의 출처표시로서 인식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이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물품에 상표를 표시한 것은 상표의 사용이라고 할 수 없다. ()
- ⑩ 상표등록취소사유(제11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입증은 상표권자가 그 사용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상표권자가 입증을 하여야 한다. ()
- ⑪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상표등록취소심판 계속 중에, 심판청구일이나 지정상품 범위를 달리하여 다시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전 심판과 후 심판에서 공통적으로 포함된 일부 지정상품에 관하여 중복하여 사용사실 증명책임을 상표권자가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
- ⑫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상표등록취소심판 계속 중에, 심판청구일이나 지정상품 범위를 달리하여 다시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중복심판청구에 해당할 것이다. ()
- ⑬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상표등록취소심판에서 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 확정된 후에 다시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될 것이다. ()
- ⑭ 상표권자가 제3자를 상대로 침해금지청구소송을 제기한 것 자체를,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등록상표의 사용이라고 할 수 있다. ()
- ⑮ 제119조 제1항 제3호를 사유로 하는 인용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때부터 등록상표는 소멸하는 것으로 본다. ()

기출지문

- ▶ 수개의 지정상품을 대상으로 하여 불사용취소심판청구가 있는 경우 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상품에만 등록상표를 적법하게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그 입증된 지정상품에 대한 심판청구만 기각하고 나머지에 관한 청구는 인용할 수 있다. ()
- ▶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통상사용권자는 반드시 등록된 통상 사용권자일 필요는 없다. ()
- ▶ 불사용으로 인한 상표등록취소심판은 누구나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청구인이 비록 등록상표권의 침해자인 경우에도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등록상표의 등록을 취소시키고 그로 인하여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심판청구권의 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 ()
- ▶ 상표권자 등이 완구에 대하여 관련 행정법규에서 규정하는 안전검사 등을 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당해완구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 물품으로서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지 않다거나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해 등록상표가 그 완구에 대하여 정당하게 사용되었음을 인정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
- ▶ 약사법에서 규정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품목별 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상표라도 이를 선전·광고하거나 지정상품에 부착하여 판매하는 것은 정당한 상표 사용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의 취소를 면할 수 있다. ()

상표법 1차 기본강의 쪽지시험 19회

(2023. 6. 2 기본강의 복습)

[기타 취소심판]

- ① 제3자가 단체표장을 사용하여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이나 지리적 출처를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하였음에도 단체표장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취소사유이다. ()
- ②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자나 그 소속 단체원이 제223조(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를 위반하여 단체표장을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지리적 출처에 대한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한 경우에는 등록취소사유이다. ()
- ③ 증명표장권자가 증명표장을 자기의 상품에 대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명표장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한다. ()
- ④ 제92조 제2항(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목)에 해당하는 상표가 등록된 경우에 그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가 해당 상표등록일부터 5년 이내에 취소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상표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한다. ()

[권리범위확인심판]

- ①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확인대상표장을 사용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그것이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
- ②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피청구인이 자신의 행위는 진정상품을 병행수입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심판원은 이에 대해서 심리 및 판단하지 않는다. ()
- ③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청구인이 상표의 동일 또는 유사여부 등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오로지 선사용권(상표법 제99조 제1항)만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특히 심판원은 선사용권은 심리하지 않고, 상표의 동일·유사 여부 등을 심리해야 한다. ()
- ④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2이상인 경우라도, 명문의 규정상 지정

상품마다 청구할 수 없다. ()

- ⑤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상표법 제99조 제2항(자기의 성명 등 상거래 관행)에 따라 선사용권이 인정되는지를 심리하지 아니한다. ()
- ⑥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상표법 제90조 제1항(자기의 성명 등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인지를 심리하지 아니한다. ()
- ⑦ 등록상표에 무효사유가 명백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심판청구이익을 긍정한다. ()
- ⑧ 상표권이 포기로 소멸한 경우에는 그 상표권은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상표권이 포기로 소멸되기 전인 과거의 등록상표와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등록무효심판이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 ⑨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상표가 영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피청구인의 별건 등록상표가 상기 영문에 한글음역이 결합되어 있고 그 결합으로 새로운 관념이 형성되지 않고 확인대상상표와 별건 등록상표가 동일하게 호칭되고,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사용상품과 별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동일한 경우라면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부적법 할 것이다. ()

기출지문

- ▶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판청구서의 확인대상상표 및 상표가 사용되고 있는 상품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자신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상표 및 그 사용상품과 비교하여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상표 및 그 사용상품과 같게 하기 위하여 심판청구서의 확인대상 상표 및 사용상품을 보정하는 것은 요지변경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 ▶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심판청구서에 등록상표와 대비될 수 있는 상표견본 및 그 사용상품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

[심결취소소송]

- ① 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심결의 위법성이므로 당사자는 심결에서 판단되지 않은 처분의 위법사유도 심결취소소송단계에서 주장·입증할 수 있고, 법원

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 없이 심리·판단하여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 것이다. ()

상표법 1차 기본강의 쪽지시험 20회

(2023. 6. 7. 기본강의 복습)

[마드리드]

- ① 대한민국 특허청을 본국관청으로 하여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제출원서를 본국관청 또는 국제사무국에 제출할 수 있다. ()
- ② 대한민국 특허청을 본국관청으로 하여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제출원서를 영어, 스페인어, 불어로 작성할 수 있다. ()
- ③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상표권자가 상표권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전용사용권자, 통상사용권자, 질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
- ④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한 일반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
- ⑤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출원인은 출원공고 결정전에 있어서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때에 한하여 상표 및 그 지정상품을 보정할 수 있다. ()
- ⑥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등록의 대상인 상표가 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기초출원 및 기초등록에 대한 집중공격으로 그 국제등록이 소멸된 경우에는 그 국제등록의 명의인은 그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특허청장에게 상표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 ()
- ⑦ 제205조(국제등록 소멸 후의 상표등록출원)에 따른 출원이 종전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출원공고 및 이의신청을 적용하지 않는다. ()